

<법원의 청와대 인근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평통사 환영 논평>

## 경찰이 금지한 평통사 청와대 앞 집회와 행진, 법원은 허용!

- 서울행정법원, '종로경찰서의 청와대 인근 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평통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(평통사 승소)
- 법원, “▲본안청구 승소 가능성 높고, ▲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되고, ▲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없어”

1. 서울행정법원 제1부가 11월 6일 오후, 종로경찰서의 청와대 인근 집회 및 시위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평통사의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.

2. 평통사(신청인)는 2017. 11. 1, 종로경찰서에 2017. 11. 7. 10~22시까지 청와대 사랑채 옆 인도에서 '고 조영삼 열사 추모 및 사드배치 철회'를 개최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'청와대 사랑채 옆 - 고도빌딩 - 정부종합청사 - 세종문화회관' 경로를 왕복하는 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하였다.

3. 종로경찰서(피신청인)는 미 대통령 방한 관련 경호상의 위험과 해당 행진경로 및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12조 제1항,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였다.

4.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▲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이 높고, ▲ “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”되고, “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”고 밝혔다.

5. 이번 결정은 미 대통령 방한에 따른 경호를 위해서는 집회 및 시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경찰의 행정편의주의와 사회통념을 뛰어넘어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예외없이 인정한 값진 결정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.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용기있는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.

6. 우리는 이번 결정이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.

2017. 11 .6

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
(상임대표 문규현)